



## 위해성 분야의 최근 성과와 향후 계획

최근 농촌진흥청은 사과 적과제인 '세빈' 약제의 오용에 의한 꿀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경감을 위하여 사용방법을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도록 농약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농약 살포시 사과 재배농가가 양봉업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박경훈 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해성평가연구실

에서 등록 취소된 농약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 대상농약 158종 중 110종을 완료하고 나머지 48종에 대하여 평가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산림·검역용 농약 3종을 제외한 9종의 농업용 고독성 농약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던 패러콧농약도 등록을 취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약 위해성 분야의 평가는 인축독성과 생태독성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평가를 하고 있다. 금년에는 독성연구실을 새로이 신설하여 독성평가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위해성평가 업무는 등록을 신청한 농약의 독성과 위해성을 독성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농약 안전성전문위원회와 농약기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독성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독성과 어독성을 구분하며, 원제의 사람·가축에 대한 독성구분, 원제의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구분, 1일섭취허용량 및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 소비자 및 환경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 기준 설정,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 설정, 농약의 표시사항 설정,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설정, 그림문자 설정,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설정, 해독 및 응급처치방법을 설정한다. 핵심업무는 독성구분 등 안전기준 설정과 위해성평가로서 신청된 농약의 등록적합성을 판단하는 일이다.

최근 위해성분야에서는 소비자와 농약살포자 위해성평가기준 및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을 고시하여 제도화 하였고, EU와 미국에서 취소된 농약 중 국내에서 사용 중인 농약에 대한 위해성도 평가 중이다. 또한 작년에도 등록이 취소된 패러콧농약 성분이 5% 포함된 합제농약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독성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고독성농약이 됨에 따른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후에는, 신규 원제에 대한 표시기준을 GHS(Global Harmonization System)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농작업자 위해성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기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㉞